

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파주시장

1. 지정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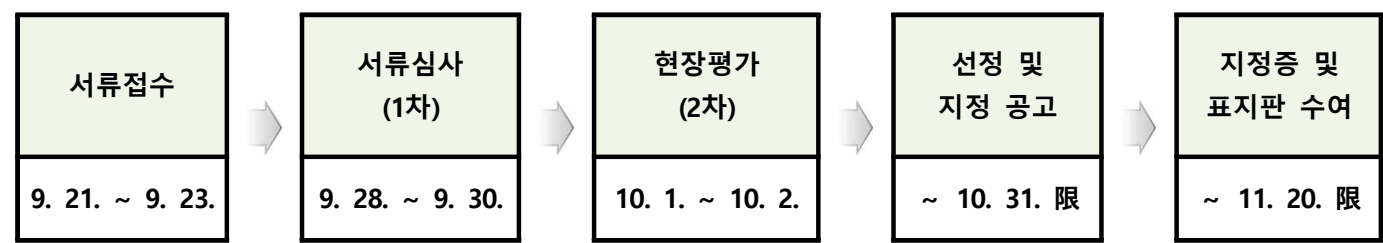
- 지정대상: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최대 5개소(정비업, 매매업, 해체재활용업)
※ 최종점수 80점 이상인 사업자가 없는 경우, 모범사업자 지정하지 않음
- 유효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
- 지원내용
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2조에 따른 분기별 지도·점검 3년간 면제
 -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부착 및 홍보 지원 등

2. 신청자격

-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자
 - *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, 자동차정비업, 자동차해체재활용업
 - * 휴업 기간은 제외하며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 양수 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.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
- 최근 3년간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

3. 평가 및 지정

○ 지정절차 및 일정



※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

○ 평가방법

- 【1차】 서류심사: 제출서류 확인, 부적격 사업자 제외 및 대상자 선정
- 【2차】 현장평가: 평가위원 현장 방문

○ 지정방법 및 평가배점

- 업종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순으로 지정
-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

[자동차매매업]

합계	고객서비스	시설 및 환경	운영실태	추가 고려 사항 이행도	정성평가	가점
100	25	20	25	10	20	· 자치단체장 등 표창

[자동차정비업]

합계	고객서비스	시설 및 환경	품질인증	추가 고려 사항 이행도	정성평가	가점
100	30	25	10	10	25	· 자치단체장 등 표창 · 자동차 제작사 제휴 및 직영이 아닌 정비업소

[자동차해체재활용업]

합계	고객서비스	시설 및 환경	추가 고려 사항 이행도	정성평가	가점
100	30	50	10	10	· 자치단체장 등 표창

- 동점자 처리방침

우선순위	①	②	③
구 분	업종별 평가표 각 항목 순서에 따른 배점 고득점 사업자	사업자 등록(양수) 이후 행정처분이 없는 사업자	사업자 등록(양수)일이 빠른 사업자

4. 신청 및 접수

○ 공고기간: '26. 9. 9.(수) ~ 9. 23.(수)

○ 접수기간: '26. 9. 21.(월) ~ 9. 23.(수)

※ 주말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접수 불가

※ 신청서 접수는 마감 시간(2026. 9. 23. 17:00)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신청방법: 파주시청 운수지도팀 **방문하여 직접 제출**※대리/우편접수 불가

- 제출처: 파주시 시청로 47, 중앙빌딩 4층, 운수지도팀

- 문의처: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(☎ 031-940-5781)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필수 서류	-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-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4대보험 가입 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명부(대표 1인 사업장 제외 가능) 1부 - 사업계획서(서비스품질 향상 계획) 1부※자유형식 기재
해당사항 있을 경우	- 3년 이내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 - '고객 불만(불편) 접수 및 처리 대장' 등 고객 불만(불편) 사항 처리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- 폐기물처리계획(변경)확인 증명서 사본 1부(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) - '종사원 교육 대장' 등 정기적 종사원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세금(지방세, 국세 등), 세외수입 완납 증명서 1부

5. 유의사항

○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등※지정취소 시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7조의2(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)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·양수 또는 폐업하는 경우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○ 기 타

-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함

붙임 1.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.
2. 사업계획서(서비스품질 향상 계획) 1부. 끝.